

II - 2	제 목	공사업 등록기준(2)(기업진단기준 등)	
회신일자	2002년 8월 8일 2003년 2월 10일	회신방법	산자부 전력57341-627 산자부 전력57300-115
의 요 지			
질의1) 진단받은 날의 의미는 질의2) 예금의 평균잔액이 진단기준일 현재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는? 질의3) 설립 후 2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신설법인이 신규등록시 제예금 평가 방법은?			
회 신 내 용			
답변1) 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 제25조제1항의 진단받은 날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자가 실제 진단업무를 수행한 날을 의미함. 답변2) 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으로 평가함. 답변3) 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 제22조제4호에서는 신설법인이 법인설립 등 기 후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진단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 신설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 이후 20일 이내에 신규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예금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			